

韓國科學財團 出帆

國家的次元에서 組織的 支援

頭腦 知識產業化의 嚮導的 역할
多分野 相互間의 觸媒的 역할
高級頭腦 輩出에 生産的 역할

國際科學 技術協力 推進의 窗口 役割

科學技術界의 깊은 關心을 모으던 “한국과학財團이 지난 5月 18日 法院登記를 마침으로서 出帆했다.

財團은 4차 5개년 計劃이 끝나는 오는 81년까지 267億원의 基金을 造成하게 된다. 初代 理事長에는 崔亨燮 科學技術處 長官이 兼任하였고 事務總長에는 金澄基 科技處 長官이 맡게 되었으며 基金 10억이 마련 될때까지 우선 兼任하는 것이라고 한다.

本財團의 設立을 위해 1974年 科學技術處와 文教部가 共同으로 推進키로 合意, 1976年 5月末 美國科學 아카데미와 合同으로 財團設立의 妥當性 調査가 實施되었

고 1976年 9月 30日 經濟長官 第31次 會議에서 財團法案이 議決되었다. 이어 同年 10月 15日 國務會議에서 同法案이 議決, 同年 12月 2日 定期國會에서 通過, 法律 第2943號(76年 12月 22日)로 公布되었다. 77年 2月 1日 國務會議(第6回)에서 同法 施行令이 議決되고 大統領令 第8445號(77年 2月 14日)로 公布되었고, 第1回 設立 準備 委員會를 (77年 3月 11日) 열고 定款案을 通過시켰다. 1977年 5月 4日 大統領 閣下의 定款決裁 및 100萬원 出捐이 있었고 지난 5月 21日 初代理事長에 科學技術處 長官이 任命됨으로 出帆하게 된 것이다.”

初代 理事長에

崔亨燮 科技處 長官

1977年度 事業 및 運營計劃

1. 基本方針

가. 1977年度에는 財團事業 遂行을 爲한 運營 節次等에 관한 基本 指針을 調査 研究 確立한다. 1977年度 財團의 運營費를 最少로 하고 事業費에 優先順位를 둔다.

다. 財團의 事務室은 無償으로 貸與받고 職員은 行政支援 業務에 必要한 最少限의 人員만을 採用한다.

라. 財團의 基金積立 및 事業費支援을 위한 外援資金 및 民間資金 誘致에 力點을 둔다.

마. 科學技術基金은 77年末에 出捐토록 한다.

한국 과학재단 사업계획

라. 國際協力體制 樹立

國家 및 對象 機關名	措 置 事 項
美國：國立科學財團(N.S.F)	1977年 5月 24日 協力覽書 署名交換豫定(場所：서울) 〈覽書內容〉 <input type="checkbox"/> 共同研究事業 <input type="checkbox"/> 科學者相互交流 <input type="checkbox"/> 國際學術세미나 共同開催等
獨逸：獨逸研究協會(D.F.G)	1977年 6月 下旬 第1次 常設 共同委員會 開催豫定(場所：본) 〈覽書內容〉 <input type="checkbox"/> 共同研究事業 <input type="checkbox"/> 科學者相互交流 <input type="checkbox"/> 國際學術세미나 共同開催等
佛蘭西：國立科學研究中心(C.N.R.S)	1977年 5月 韓佛混成委員會에서 合意豫定(場所：서울) 〈協議內容〉 <input type="checkbox"/> 共同研究事業 <input type="checkbox"/> 科學者 相互交流 <input type="checkbox"/> 國際學術세미나 共同開催等
日本：日本科學技振興協會(J.S.P.S)	1977年 6月 韓日科學長官會議時 合意豫定(場所：東京) 1977年 7月 日本科學技術振興協會의 協力調查團 訪韓豫定
自由中國：國立科學委員會(N.S.C) 傘 下 6個 基礎科學研究 機關 (生物, 物理, 數學) (工學, 農業, 化學)	1977年 3月 30日 自由中國 國家科學委員會 委員長 來韓時 覽書交 換 豫定
카나다：國立研究委員會(N.R.C)	1977年度 下半年期 協力提議 豫定
濠洲：聯邦科學 및 産業研究機關 (C.S.I.R.O)	駐韓大使館과 接觸하여 原則的 合意到達

마. '77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內容

(單位：千圓)

事 業 名	細 部 事 業	豫 算	備 考
1. 基 金	基金 原本으로 積立	351,000	
가. 政府出捐金		350,000	
나. 設立者 出捐金		1,000	
2. 事 業 費		150,000	
가. 研究費 支援	1) 基礎科學 2) 工學 및 應用科學 3) 國際間 共同研究 4) 其 他	130,000	基金果實：30,000圓 (推定) 包含
나. 研究獎學金 支援	1) 碩士課程 2) 博士課程	10,000	
다. 學術活動 支援	1) 國內學會 支援 2) 外國 有名學會誌 論文 揭 載料 支援	7,000	
라. 國際協力 事業	其他 國際協力	3,000	
3. 運營費 및 創業費	1) 人件費(7人) 2) 創業費 및 固定資產等	30,000	
計		531,000	

韓國科學財團法

(1976. 12. 22)
(法律 第2943號)

第1條 (目的) 이 법은 韓國科學財團(以下“財團”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科學技術研究能力의 培養과 科學教育의 振興 및 科學技術의 國際交流를 增進하게 함으로써 科學技術의 暢達 振興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法人) 財團은 法人으로 한다.

第3條 (設立) ①財團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기타의 登記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條 (定款) ①財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事業에 關한 事項
5. 理事會에 關한 事項
6. 任員 및 職員에 關한 事項
7. 財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8. 基金에 關한 事項
9. 公告에 關한 事項
10.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11. 解散에 關한 事項

②財團이 定款을 變更할 때에는 科學技術處長 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5條 (事業) 財團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1. 科學技術研究活動의 支援
2. 研究獎學金의 支援
3. 科學技術教育의 向上 發展을 위한 事業의 支援

4. 學會 및 國內外 學術活動의 支援
5. 科學技術의 國際交流 增進을 위한 事業의 支援
6. 기타 科學技術의 發展에 필요한 事業의 支援

第6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財團이 아닌 者는 韓國科學財團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할 수 없다.

第7條 (任員) ①財團에 理事長 및 副理事長 各 1人을 包含한 11人 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②任員은 定款에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選任한다.

③理事長 및 監事以外의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④理事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⑤理事長以外의 理事와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定한다.

第8條 (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財團을 代表하며 財團의 業務를 統理한다.

②副理事長은 理事長을 補佐하며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監事는 財團의 會計 및 業務를 監査한다.

第9條 (理事會) ①財團의 重要한 事項을 審議 決定하게 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 및 副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構成한다.

③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④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議長은 可否各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⑥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10條 (職員의 任免) 財團의 職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한국 과학재단 법

第11條 (基金) ①財團의 運營 및 事業에 所要되는 資金에 相當하게 하기 위하여 財團에 基金을 設置한다.

②第1項의 基金은 政府의 出捐金이나 外國機關으로 부터의 援助金과 共同參與를 위한 參與金 및 一般人으로 부터의 寄附金으로 造成한다.

③第1項의 基金의 사용 運營 및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出捐金) ①政府는 財團의 設立, 施設 運營 및 事業에 필요한 經費와 基金에 相當하게 하기 위하여 財團에 出捐金을 交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은 科學技術振興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科學技術 基金에서도 交付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交付·使用 및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國有財産의 無償貸付) 政府는 財團의 設立과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有財産을 財團에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第14條 (事業計劃書等의 提出) 財團은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를 作成하여 科學技術處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第15條 (決算書의 提出) 財團은 每事業年度의 歲入歲出의 決算書를 作成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 다음年度 2月末月까지 科學技術處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16條 (秘密嚴守) 財團의 任員이나 職員 및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知得한 秘密

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 (民法의 準用) 財團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 民法中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8條 (罰則) ①第16條의 規定에 違反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6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19條 (罰則適用의 擬制) 財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0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立準備) ①科學技術處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內에 5人以內의 設立委員會를 委囑하여 財團의 設立에 관한 事項을 處理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會는 定款을 作成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7條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設立當時의 財團의 理事長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副理事長과 理事 및 監事는 科學技術處長官이 任命한다.

④設立委員會는 財團의 設立登記를 한 後 遲滯없이 理事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